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7. 9. 19.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7. 9. 19.

라. 상정 및 의결 : 제5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재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(97. 9. 27.) 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정경제국장 박상익)

가. 제안이유

○ 부천시공수의조례 및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함으로

써 자치법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부천시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공수의조례에 규정(안 제6조)

·공수의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※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 폐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8. 체계적인 심사내용

○ 없음

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12호
의결년월일	97. 9. 30. (제55회)

제출년월일:97. 9. 19.

제 출 자: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부천시공수의조례 및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자치법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부천시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공수의조례에 규정 (안 제6조)

· 공수의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※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 폐지

□ 관계법령발췌서

○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

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공수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여비) 공수의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신설	제6조(여비) 공수의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6조(생략)	제7조(현행 제6조와 같음)